



2024학년도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인사 운영 매뉴얼



2023. 12.

서울특별시교육청 [초·중등교육과]

차 례

I.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개요
1. 전환 일반
① 목적····································
_ ② 전환 대상1
③ 전환 시기·기간 및 재전환 등 ······ 2
④ 전환 사유 2
⑤ 전환 유형 및 방법3
⑥ 전환 대상자 선정6
기 지정 및 배치 7
2. 임무·역할·연수
① 임무 8
② 역할9
③ 연수 및 교육훈련9
II. 시간선택제 교사 인사관리
1. 신분 보장
① 정년9
고 경력 인정(재직기간)······9
③ 보수·수당 등··································
 ④ 맞춤형 복지10
5 연금 11
2. 복무
① 근무시간 및 유형 11
② 초과근무 12
③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12
④ 휴가 ···································
5 휴직14
6 전환지정 해제 ···································
【붙임 1】전일제교사·시간선택제 교사 비교15
【붙임 2】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한 휴가 기준17
[붙임 3]특별휴가의 종류별 사유와 휴가기간19
【붙임 4】시간선택제 교사 관련 법령······20
【서식 1-1】시간선택제 근무 신청서(학교 내 전환 유형) 23
【서식 1-2】시간선택제 근무 신청서(전보 조치 후 전환 유형) 24
【서식 1-3】시간선택제 근무 신청서(사회적 능력 배양 계획서) 25
【서식 2】학교장 추천서 26
【서식 3】시간선택제 근무 해제 신청서27
【참 고】시간선택제 근무 신청 관련 서류 양식 등 28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개요

시간선택제 교사의 개념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가지는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 전일제 교사가 시간제 교사로 전환하여 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면서 '학생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는 교사 ※ 서울시교육청은 '주 20시간' 근무로 제한하여 학년도 단위로 전환 운영

1 전환 일반

□ 목적

- (교사 배치의 유연성 증진) 안정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교사 배치의 유연성 증진
- (교원복지 향상) 육아·가족간병·학업·사회적응이 필요한 교사들의 가정과 직장생활 병행 지원

□ 전환 대상

- 국·공립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사 중 시간선택제 교사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자
 -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초등은 교과전담, 중등은 전환 가능 과목에 한하여 전환
 - ※ 유치원 특성상 유치원 교사는 담임 배정이 불가피하므로 전환 대상에서 제외
 - 수석교사는 전환대상에서 제외
 - ※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기가제교사는 해당사항 없음
 - 특수,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교사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
 - 2024년 정기전보 대상자는 전환대상에서 제외
 - ※ 비정기 전보를 희망하여 전보 내신서를 제출한(또는 제출 예정인) 교사도 전환 대상에서 제외

□ 전환시기·기간 및 재전환 등

- (전환시기) 2024. 3. 1.
- (전환기간) 2024. 3. 1. ~ 2025. 2. 28. (1년 단위 전환)
 - 1년 단위로 전환하되, 전환 횟수에는 제한 없음*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37조제2항, 제40조 제5항
 - 전환기간 동안에는 전일제 교사로의 재전환은 원칙적으로 금지
- 전환 기간 1년 종료 후 시간선택제로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 전환 시와 동일한 신청과 지정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전환 사유

- 육아, 가족간병, 학업, 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육아)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36조1항1호
 -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나, 취학 중인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가능
 - ※ (예시) 만 9세의 초 2 자녀는 대상이 되나, 만 8세의 초 3 자녀는 대상이 아님
 - 만 8세 이하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도 포함
 - 이혼한 경우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하며, 재혼한 경우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도 포함

※ 시간선택제 교사(육아사유) 신청 시 주의할 점(본 매뉴얼 p.16 참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6항】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5 및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36조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지급되며, 시간선택제 신청한 동일자녀에 대해 추후 육아휴직 시 "<u>육아휴직수당"</u>이 지급되지 않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및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가족간병)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u>부모, 배우자,</u>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양부모·양자녀도 포함
 - 이혼한 상태에서 간호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는 대상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진 경우에 한하며, 재혼한 경우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도 포함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
- (학업)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국내 교육기관에 입학·재학하는 경우
- (사회적응 능력 배양) 그 외 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위해 필요한 경우
- 퇴직 전 사회적응 능력 배양 등
- 평생교육기관 교육 수강
- 업무능력 향상 및 자기개발을 위한 목적

□ 전환 유형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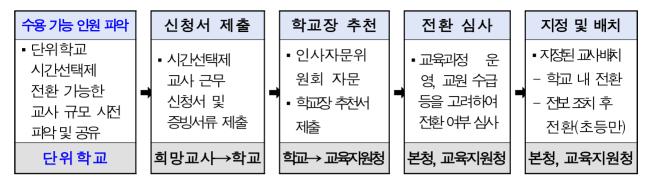
○ 전환 유형

※ 교사 두 명씩 1개 조를 이루어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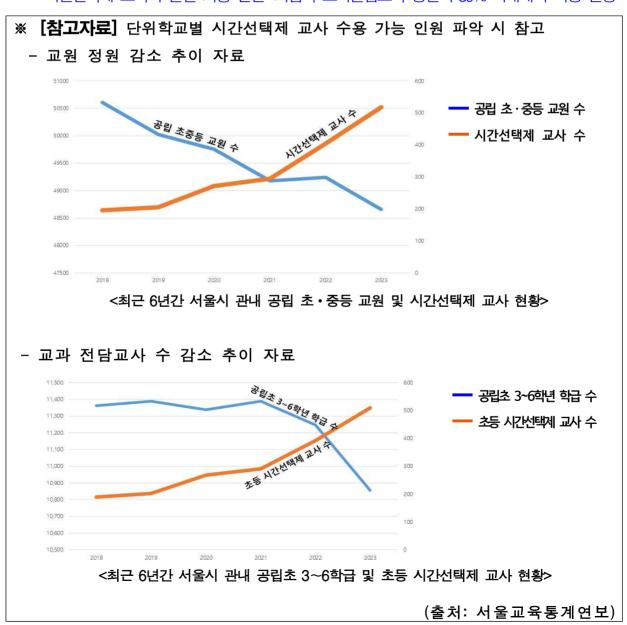
전환유형	전환 방법	결원 보충
학교 내 전환	 같은 학교에서 교사 두 명이 신청할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서 두 명 모두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 중학교·고등학교는 같은 학교, 동일 교과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전환 가능 	○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 기간제교사 채용 또는 정규 교사 충원
전보 조치 후 전환 (초등만 운영)	○ 한 학교에서 교사 한 명이 신청할 경우 다른 학교에서 신청한 교사와 조건을 맞추어 전보를 통해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 ○ 조를 이루지 못한 희망교사 1명만 신청 가능	○ 전보 전(前) 학교에 기간제교사 채용 또 는 정규 교사 충원

※ 학교별 시간선택제교사 수용 가능 인원 사전 파악 필수

○ 저확 절차



- (수용 가능 인원 파악) 학교별 교사(교과전담교사) 정원 감소 상황 및 교육 과정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시간선택제 교사의 전환 가능 인원 파악***및 공유
 - *** 시간선택제 교사의 전환 가능 인원: 가급적 교과전담교사 정원의 50% 이내에서 지정 권장



- (신청서 제출) 근무신청서 및 전환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 '시간선택제 근무 신청서' 【서식1-1, 1-2】참고

전환사유	증빙서류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간병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과 간호대상자 간 관계가 나타나야함), 진단서**** ****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의료법」 제17조에 따라발행한 진단서로, 치료기간(이 기간 내에서 시간선택제 근무 가능) 및 간병인의 필요성 명시
학업	학위 수여가 가능한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서(합격증), 재학증명서 등
사회적응 능력 배양	평생교육기관 수강 확인서(수강 신청서), 사회적응 능력 배양 계획서**** 등 ***** 인사자문위원회 및 임용권자에게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능력 배양 계획서(【서식1-3】참고)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가능

- (학교장 추천) 인사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반영하여 학교장이 임용권자에게 추천 우선 순위를 명기하여 추천
 - ※「교육공무원임용령」제3조제6항에 따라 소속 교사의 임용권을 학교장이 가지고 있는 국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최종 지정
- (인사자문위원회 자문)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영향과 교사 정원의 감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장에게 추천 우선 순위와 추천 여부
- (추천서 제출) 학교 내 전환 대상자의 경우 학교 자체 추천 기준******을 마련하여 추천서에 추천 우선 순위 명기, 【서식2】참고

***** 교육청 전환 대상자 선정 기준(p.5)을 참고하여 협의를 통해 마련

(단위: 명)

※ 학교장 추천 인원(예)

수용	신청	전보 조치 후	추천인원			
가능 인원	인원	전환 희망자 (유, 무)	학교내	전보후	비고	
	2	해당없음	2		○학교 내 전환 대상자에 대한 추천	
	3	οĤ	2	1	우선순위 명기 후 추천	
2	3	무	2		○전보 조치 후 전환은 초등만 적용	
	4	٩ H	2		학교별 수용가능인원 범위 내	
	4	무	2		1명이내추천	

수용	신청	전보 조치 후	추천	인원	
가능 인원	인원	전환 희망자 (유, 무)	학교내	전보후	비고
	2	해당없음	2		
	3	유	2	1	 ○학교 내 전환 대상자에 대한 추천
	3	무	2		
4	4	해당없음	4		○전보조치후전환은초등만적용
4	5	유	4	1	· 학교별 수용가능인원 범위 내
	5	무	4		
	6	유	4		1명 이내 추천
	6	무	4		

- (전환심사 및 배치) 임용권자가 교육과정 운영·정원 관리 등을 감안하여 전환 사유를 심사하여 지정·배치

□ 전환 대상자 선정

- 이 (선정 인원) 교육청 교원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
- (선정 기준) 학교장 추천 인원이 많거나, 동일 교육지원청 내 초등
 '전보 조치 후 전환 유형' 신청자가 홀수일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 교육청 전환 대상자 선정 기준

순위	대상	구비서류
1순위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간병하는 교육공무원 (동일 거주자 우선)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기족관계증명서
2순위	만 8세 이해(초등학교 2학년 이해) 다자녀(3명 이상)*********를 둔 교육공무원 ******** 만 8세 이하 자녀의 숫자에 따라 세 분하여 순위 선정 가능	주민등록등본 또는 기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취학 중인 경위)
3순위	육아를 사유로 전환하는 교육공무원	
4순위	가족간병을 사유로 전환하는 교육공무원	주민등록등본 또는 기족관계증명서 (본인과 간호대상자 간 관계가 나타나야 함) 진 단서
5순위	생년월일이 빠른 교육공무원(고연령자)	

□ 지정 및 배치

- (기본 원칙)
 - 임용권자는 교육과정 운영과 임용대기자 현황 등 교원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재직 중인 학교 내에서 지정을 원칙으로 하며, 초등은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 후 지정 가능
 - 초등은 교과전담, 중등은 전환 가능 과목에 한하여 배치
 - 초등은 교과전담에 한하여 배치하므로 신청한 교사 수보다 교과 전담교사 정원이 적을 경우, 학교의 추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교과전담교사 정원 범위 내에서 최종 지정
 -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기간 중 **파견·8.31.자 명예퇴직은 불허**, **휴직**, 의원면직 등으로 인한 중도 지정해제는 원칙적으로 불가
 - ※ 휴직·파견·8.31.자 명예퇴직·8.31.자 정년퇴직 예정 교사는 신청 불가
 - 전환기간 동안 **전일제 교사로의 재전환은 원칙적으로 금지**
 - (초등) 학교 내 전환 유형 + 전보 조치 후 전환 유형
 - 같은 학교에서 두 명의 교사가 전환하는 경우 기간제교사 채용 또는 정규 교사 충원
 - 한 학교에서 교사 한 명이 신청할 경우 다른 학교에서 신청한 교사와 조건을 맞추어 전보를 통해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 전보 전(前) 학교에 기간제교사 채용 또는 정규 교사 충원

※ 전보 조치 후 전환 유형

- (대상) 공립 초등 시간선택제 전환 희망교사 중 같은 학교에서 두 명으로 조를 이루지 못한 교사 중 희망자
- (전보 시기 및 방법) 정기 전산 전보 후 동일 교육지원청 내 학교로 전보
- (전보 조치 우선 순위)
 - (1순위) 학급수(특수학급 제외)가 적은 학교 교사
 - (2순위) 시간선택제 전환 신청교사가 많은 학교 교사
 - (3순위) 교육경력이 낮은 교사
- (전보 학교 배정) 가급적 전환대상자의 거주지를 고려하여 배정하되, 관내학교의 정원 현황(공석 수 등)을 고려하여 배정할 수 있음

- (전보주기) 「2024. 3. 1.자 초등학교 교사 전보 원칙」 제4조(정기 전보 대상) 제3항과 제4항에 따름
 - 전환 후 근무교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이고, **전환 전 근무교 경력과 전환** 후 근무교 경력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 되는 교사는 5년 이상이 되는 당해 연도 1회에 한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기 전보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전보를 희망하지 않는 교사는 전환 후 근무교 근무 경력으로만 정기 전보 대상자 여부를 결정함
 - **강동송파·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교사는** 전환 후 근무교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이고, 전환 전 근무교와 전환 후 근무교 근무 경력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 될 때 정기전보 대상이 됨
 - 이외 인사 및 전보와 관련된 내용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교원 및 교육 전문직 인사관리원칙'과 '2024. 3. 1.자 초등학교 교사 전보 원칙'에 따름

○ (중등) 학교 내 전환 유형

- 같은 학교에서 동일 교과목 두 명의 교사가 전환하는 경우 해당 교과목 전일제 교사 한 명 충원
- 한 학교에서 다른 교과목의 교사 두 명이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일제 교사의 충원이 안 되어 전환 허용이 어려우나, 학교장이 특정 교과의 전일제 교사 한 명의 충원을 요청하는 경우는 가능
 - ※ 예: 수학교사와 중국어교사가 각 한 명씩 전환 신청 시, 학교장이 수학교사 한 명의 충원을 요청

일 임무·역할·연수

□ 임무

- 근무시간 내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 상담 및 생활지도 등 전일제 교사와 동일한 임무 담당
- 시간선택제 교사는 담임 배정 대상에서 제외

□ 역할

- 원칙적으로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역할을 담당
- 학교장은 시간선택제 교사가 있는 경우 해당 교사의 근무시간에 맞게 적정량의 업무 범위·업무량을 배정(주당 수업시수는 14시간 이하)

□ 연수 및 교육훈련

- 연수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자격연수·직무연수·특별연수 대상에 포함
 -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역량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전일제 교사와 연수시간 및 연수비 기준 동일하게 적용
- 단위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율장학·컨설팅장학·연구수업, 교과교육연구회 등에 동등하게 참여

Ⅲ │ 시간선택제 교사 인사 관리

1 신분 보장

□ 정년: 전일제 교사와 동일하게 62세임

※「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 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 경력 인정(재직기간)

-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다만, 일 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인정

시간선택제근무기간 × <u>시간선택제 교사의 주당 근무시간</u> 교사의 주당 근무시간

* 교사의 주당 근무시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제1항에 의한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 교사의 각종 경력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다른 법령 및 예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산식을 준용함
 - ※ 자격연수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별표 1·별표 2의 경력요건이 "햇수(예:3년)"로 표기되어 있는 바, 시간선택제 교사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 o 전보를 위한 경력* 산정 시에는 시간선택제 교사 근무기간을 100% 인정
 - * 전보 대상자 선정 근무기간, 서울시 근무 경력 산정 시 근무기간, 거주기간 산정 시 근무기간

□ 보수·수당 등

- (봉급) 정상 근무 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
 - 호봉은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전일제로 근무한 경우와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
- (수당) 정상 근무 시 지급받을 수당 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
 -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지급
 - 교원 연구비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평가 및 상여금) 시간선택제 교사에 대한 평가는 전일제 교사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성과상여금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 **맞춤형 복지:** 전일제 교사와 동일하게 인정
 - 복지 항목

구분 구성		사례	
기 본	필수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	생명/상해보험
항 목	선택	왕 문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입원의료비 설정하고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	
자율	항목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 개인별 복지점수(기본 + 근속 + 가족점수) ※ 1점은 1천원에 상당

- (기본점수) 전일제 교사와 동일하게 적용
- (근속·가족점수) 전일제 교사와 동일하게 적용. 다만, 근무기관이 복수일 경우 중복적용 불가

□ 연금

- (적용연금) 전일제 교사와 동일하게 공무원 연금을 적용받음
- (재직기간)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전일제로 근무한 경우와 동일하게 시간선택제 근무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포함
 - ※ 단. 퇴직수당의 경우 재직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기여금) 시간선택제 근무로 인해 감액된 보수 지급 시에도 전일제 근무 시 받게 될 보수를 기준으로 기여금을 산정·징수
 - ※ 기여금 및 재직기간 산정(예시)
 - 1년 동안 주당 20시간씩 시간선택제 근무를 한 경우
 - ▶기여금: 전일제공무원 근무 시 내던 기여금이 200,000원이었다면,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시에도 200,000원을 내야 함
 - ▶재직기간: 전일제 공무원과 같이 1년을 재직기간에 산입함
- (퇴직급여) 10년 이상 재직과 10년 미만 재직으로 구분하여 지급
 - (10년 이상)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 공제 일시금 중 택 1 + 퇴직수당
 - (10년 미만) 퇴직연금 일시금 + 퇴직수당

2 복 무

□ 근무시간 및 유형

- 주 20시간 근무
 - 1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격주제· 격월제 근무는 금지함
 - ※ (예) 월, 화 전일근무, 수요일 4시간 운영 가능격일제 근무 금지조항이 없으므로, 1일 근무시간이 최소 3시간 이상이면 가능

- ※ 원활한 급여 지급 등을 위해 시간선택제 교사는 학기 시작일에 나이스 (NEIS) 상에서 <u>반드시 유연근무제 신청</u>을 하여야 하며, 학교관리자는 나이스, 출퇴근관리시스템, 수기대장 등 복무관리시스템의 출·퇴근 현황모니터링 등 복무관리에 유의하여야 함
- 시간선택제 근무 중 근무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기 시작 전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 이 경우 당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
 -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7조 4항

□ 초과근무

- 지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근무 가능
- 1일 최대 4시간 이내에서 인정

□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 영리업무의 금지
 - 「국가공무원법」제64조제1항과「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에 따라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 ※ 영리업무(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종사 금지요건
 - ①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
- ②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
- ③ 국익에 상반되는 이익을 취할 우려 ④ 정부에 불명예가 될 우려
- ㅇ 겸직 허가
 - 영리업무 종사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또는 비영리 업무의 경우, 학교장이 근무시간·담당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하면 그 업무에 겪직(종사) 가능
 - ※ 비영리 업무: 사전허가를 받아 겸직 가능
 - ※ 영리업무
 - 금지요건 해당: 겸직 불가
 - 금지요건 비해당: <u>사전허가를 받아 겸직 가능</u>

- 학교장은 겸직 허가 심사 시 전환 허용 요건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추가로 고려하여야 함
- 근무시간 내에 겸직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u>육아·가족간병으로 인한 시간선택제 전환기간 중에는 대학원</u> 주간과정 진학과 이를 통한 학위 취득은 할 수 없음

□ 휴가

o (연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

※ 예시: 재직기간이 6년 이상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주 20시간)의 연가시간 산정 \rightarrow 21일 \times $\frac{20}{40}$ \times 8시간 = 84시간

○ **(병가)**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

- ※ 1일 평균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질병·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 합산 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미포함
- **(특별휴가)** 특별휴가 일수는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함
 - 경조사휴가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결 존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11 mF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사 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입 양	본인	20

-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기타 특별휴가 종류별 사유와 휴가기간: 【붙임 3】참조
- (모성보호시간)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2시간 범위,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 범위에서 가능
- (육아시간)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2시간,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 가능

□ 휴직

-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 기간 중 <u>휴직은 원칙적으로 불가</u>
- 다만,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시간선택제 근무 지정을 해제하여 전일제로 전환 후 가능
 ※ 휴직 예정자 시간선택제 신청 불가

■ 전환지정 해제 ※ '시간선택제 근무 해제 신청서' 【서식3】참고

- (당연해제) 시간선택제 근무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시간선택제 교사가 해임·파면되는 경우
- (직권해제) 임용권자가 시간선택제 교사에 대해 타 시·도 전출,
 파견 및 휴직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 전환사유와 달리 근무시간 외시간을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한 경우, 기타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수급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해제) 시간선택제 교사가 전환요건 소멸 등의 사유로 전일제로의 재전환을 희망하여 학교에 근무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환지정 해제할 수 있음

붙임 1 전일제교사·시간선택제 교사 비교

구 분	전일제 교사	시간선택제 교사
법적 지위	정규직 교육공무원	좌 동
정 년	62세	좌 동
임무·역할	교육활동, 상담, 생활지도 등	좌 동 (단, 담임 배정대상에서 제외)
근무형태	전일(全日)제(주 40시간)	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 (주 15~25시간 이내) ※ 서울시교육청은 주 20시간 근무로 제한
연 가	_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허가
병 가	_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허가
특별휴가	경조사 휴가, 출산휴가 등	좌 동※ 단,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 기준 적용
휴 직	_	원칙적으로 불가
경 력	_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전보를 위한 경력 산정 시 시간선택제 교사 근무기간 100% 인정
보 수	당해 호봉 적용	좌 동 단, 봉급은 근무시간에 비례 하여 산정
수 당	_	근무시간에 비례 하여 지급(단,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은 전액 지급)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특수업무수당** 지급
연 금	공무원 연금	좌 동
겸 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적용	좌 동 단, 전환 허용사유에 반하는지 고려하여 허용 여부 결정

※ 시간선택제 교사 지정 후 출산휴가 시 보수 및 수당 50% 지급에 주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지급한다.다만,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공무원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한다.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시간선택제전환공 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 액(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 한액으로 한다)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나머지 근무시간 단축분) 시간선택제전환공 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의 B0퍼센트에 해 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 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 5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 5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⑥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특수업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11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6. 6. 24.〉 〈별표11〉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17)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 전일제와 시간제 근무 공무원 **보수격차 완화**를 위해 동일호봉 전일제 공무원 월봉급액의 5%(5년 이하) / 8%(5년 초과) 지급
 - ※ 타 특수업무수당과 병급 허용. 현행 수당 규정 별표11에 있는 내용 구체화(지침)
 - ※ 근무기간은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되어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

불임 2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한 휴가 기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3])

1. 휴가일수 계산 등

- 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가는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
-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과 토요일 및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算入) 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근무하지 않는 날과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한다.
- 다. 휴가기간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 으로 본다.

2. 연가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 한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이 연도 중 변경된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같은 기간별로 비례하여 계산한 연가 시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한다.

- 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작조퇴 및 외출은 이를 합산한 시간을 연가 에서 공제한다.
- 다.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권장 연가 시간은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3. 병가

가. 병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나. 가목의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1일 평균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 5항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4. 특별휴가

-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나.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4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4시간 이하 근무 하는 날에는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5.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 가. 행정기관의 장은 시간외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이하 "토요일등"이라 한다)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 나. 시간외근무 시간이나 토요일등에 근무를 한 시간이 휴무하게 하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불임 3 특별휴가의 종류별 사유와 휴가기간

종 류	사 유	휴가 기간	비고
경조사휴가	가족 친척의 경조사	경조사별 휴가일수 참조	
		출산 전후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출산휴가	임신 또는 출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는 120일	출산 후 60일 이상 확보
유산휴가 (사산휴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	10일, 30일 60일, 90일	임신기간에 따름 (인공임신중절수술 제외)
배우자 유산휴가 (사산휴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3일	배우자 유산휴가(사산휴가) 기간 내에 사용,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
난임치료 시술휴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교원	2~4일	 ▶ 여성(시술일 당일 반드시 포함) - 인공수정 시술: 2일 - 동결 보존 배이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 3일 - 난자를 채취하는 체외수정 시술: 4일 ▶ 남성: 정자채취일 당일
여성보건휴가	여자교원의 생리기	월 1회 1일	분리하여 사용 불가, 무급처리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 교원	p.14 참조	증빙서류 제출 (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육아시간과 중복 사용 불가
육아시간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교원	p.14 참조	24개월 범위(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수업휴가	방통대에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한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	출석수업 기간	법정연가를 먼저 사용한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인정됨
재해구호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 그 지역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교원	5일 이내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 입은 교원의 경우 10일 이내)	재난의 피해정도,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수업지장 유무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허가
포상휴가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10일 이내	포상휴가제의 취지를 감안, 이를 신중하게 허가
가족돌봄휴가	자녀,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돌봄	연간 10일 범위	(유급휴가)자녀에 대한 돌봄 사유로 시간 단위로 사용 가능 (무급휴가)자녀 외의 가족돌봄 시, 유급 자녀돌봄휴가 소진시 일 단위로 사용 가능
임신검진휴가	여성교원의 임신검진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범위 내	최초 신청 시 임신확인서 등 제출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 가능
교육활동 보호를위한 특별휴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	5일의 범위 내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제1항

붙임 4 시간선택제 교사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워법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입용)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 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 제19조의5(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 (이하 이 조에서 "임용권자"라 한다)는 소속 교사가 원할 때에는 해당 교사를 「국 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사 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사로 지정된 교사(이하 "시간선택제 교사"라 한다)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 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 ③ 임용권자는 소속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의 남은 주당 근무시간(통상적인 근무시간에서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한 후의 근무시간을 빼고 남은 시간을 말한다)을 합산한 총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할 수 있는 교사 수는 40 시간당 1명으로 산정하되,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 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 정」에서 정하는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없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 제36조(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 ① 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용령 제19조의4에 따라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이를 지정할 수 있다.
 - 1.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2.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3.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국내 교육기관에 입학·재학하는 경우
- 4. 그 외 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위해 필요한 경우
- ② 교사가 시간선택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인사자문위원회 자문과 학교장 추천을 거쳐 임용권자가 최종 지정여부를 정한다.
- ③ 학교 이외 기관 소속 교사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학교 소속 교사에 대한 추천 절차 등을 준용하여 추천하되, 세부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 ④ 시간선택제 교사는 담임 배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근무시간 내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 상담 및 생활지도를 담당하되 학교장이 학교 여건에 따라 업무범위 및 업무량을 배정한다.
- ⑤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를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 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 제37조(시간선택제 근무기간, 시간, 유형 등) ①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배치시기는 매학 년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고 대체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매학년도 9월 1일에도 배치할 수 있다.
 - ② 시간선택제 근무기간은 3년 이내에서 본인의 희망과 교육과정 운영·정원 관리를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 이 때 기간은 학년 또는 학기 단위로 한다.
 - ③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근무시간과 유형은 전환사유,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일 최소 3시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되, 격주제 또는 격월제로는 지정하지 않는다.
 - ④ 시간선택제 근무 중 근무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기 시작 전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당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 ⑤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는 지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일 4시간 이내에서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 ⑥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겸직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다. 다만, 임용권자는 겸직 허가 심사시 전환요건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⑦ 육아·가족간병으로 인한 시간선택제 전환기간 중에는 대학원 주간과정 진학과 이를 통한 학위취득을 할 수 없다.
- 제38조(시간선택제 전환교사 배치 등) ① 교사가 시간선택제 근무를 원하는 경우 현재 재직중인 학교 및 기관에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교 교육과정 및 충원여건상 현재 재직중인 학교 및 기관에서 시간선택제 근무로의 전환 허용이 곤란한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교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타 학교 및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 ③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 근무가 적합한 학교 및 기관을 정하여 소속 교사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해당 학교 및 기관에 근무를 원하는 교사를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로 지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 ④ 시간선택제 근무 중 타 학교 및 기관으로의 전보는 본인의 희망,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 수급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할 수 있다.
- 제39조(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재직기간 계산)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기간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한다. 다만, 일 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해서는 1일로 산정한다.
- 제40조(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경우 시간선택제 근무가 당연 해제된 것으로 본다.
 - 1. 시간선택제 근무 지정기간의 만료
 - 2.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면직(퇴직), 해임 및 파면
 - ②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에 대해 전출, 파견 및 휴직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근무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③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 전환교사가 전환사유와 달리 근무시간 외 시간을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하는 경우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간선택제 근무지정을 해제한다.
 - ④ 시간선택제 근무기간 중 전환사유가 소멸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간선택제 근무지정을 해제한다.
 - ⑤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교사가 시간선 택제로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6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 제41조(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인사관리) ①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정·현원은 전일근무 교사와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는 6개월마다 전환사유의 계속 여부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를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근무시간 및 근무 형태를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서식 1-1 시간선택제 근무 신청서 (학교 내 전환 유형)

시간선택제 근무 신청서(학교 내 전환 유형)

신청자	성 명	소속		교 과 / 분 ㅇ	ţ
신청내역	근무기간		주당 총 근	·무시간	비고
	2024년 3월 1일~ 2025년 2월 28일		20시간		
신청사유 (해당란에 체크)	 ■ 육아 () - 대상 자녀: 만 0세 또는 초등학교 0학년(○째 ■ 가족간병 () - 간병 대상 및 간병인 필요성: ■ 학업 () - 목표 학위: ■ 사회적응 능력 배양 () - 주요 계획: 				막년(○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합니다.

확인사항	여	부
1. 교과전담교사 정원 부족 시		
미선정 될 수 있음을 인지 여부		
2. 휴직 예정 여부		
3. 파견 예정 여부		
4. 8.31.자 퇴직 예정 여부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학교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1-2 시간선택제 근무 신청서 (전보 조치 후 전환 유형-초등만 적용)

시간선택제 근무 신청서(전보 조치 후 전환 유형-초등만 적용)

신청자	성 명		소 속		정기 전보대신	상자 여부
	거주지 주소					
신청내역	근무기간			주당 총 근무시간		비고
	1	년 3월 1일~ 년 2월 28일		20시	간	
신청사유 (해당란에 체크)		() -	간병 목표	• •		년(○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합니다.

확인사항	ਲ	바
1. 타학교로 전보될 수 있음 인지 여부		
2. 휴직 예정 여부		
3. 파견 예정 여부		
4. 8.31.자 퇴직 예정 여부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학교장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의: 거주지를 고려하여 동일 교육지원청 내 학교로 배정할 예정이나, 시간선택제 신청교사 소속 학교 간의 전보이므로 다소 멀리 전보될 수 있음)

서식 1-3 시간선택제 근무 신청서 (사회적 능력 배양 계획서) (※필요 시)

사회적 능력 배양 계획서

소	속	직급(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제	

- 평생교육기관 교육 수강 또는
- 업무능력 향상 및 자기개발을 위한 목적 또는
- 퇴직 전 사회적응 능력 배양 등 계획 작성

위와 같이 사회능력 배양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식 2

학교장 추천서

학교장 추천서

소 속 : ○○중학교

직위(교과) 교사(○○)

성 명 : ○○○ (인)

본교의 상기교사는 ○○를 사유로 하여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12개월간)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고자 하여 사유를 검토한 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로 추천합니다.

학교 내 전환 추천 순위	전환	유형
의교 내 신환 구신 군귀	학교 내 전환	전보 조치 후 전환
0 / 0		

20 년 월 일

○○○○학교장 ○ ○ ○ (인)

서울특별시 교육감 귀하

(서울특별시〇〇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3

시간선택제 근무 해제 신청서

시간선택제 근무 해제 신청서

	성 명 소 속			교과	/분야		전환	· 구 유형	
신청자						학교 1	내 전환	전보 조	의 후 전환
	I	I				ı		1	
		근무기간			주	당 총 근	구무시간		비고
신청내역		24년 3월 1일 25년 2월 28				20 시	간		
해제 신청사유	(※ 전환요	건 소멸 시)							
교육공무	원 인사관리	규정 제40조	:에 따라	위와 집	같이 시	간선택제	에 근무 혀	해제를 4	신청합니다.
			년	월	일				
					_				
							-11	3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의 자.	실을 확인함	-							
71 75	르르 역 나람								
			년	월	일				
			학교정	성명			서명 또	는 인	

참고

시간선택제 근무 신청 관련 서류 양식

'육아'관련 서류 양식(신청)

서울 () () 초등학교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교육장(초등교육지원과장) (경유)

제 목 (○○초)교육공무원(초등학교 교사) 시간선택제 근무 신청서류 제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제1항 및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본교 교사의 시간선택제 근무 신청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	직 위	학교 내 전환 추천순위
1 2871	000	0000.00.00.		서울○○초등학교			교사	0/0
시청내여	전환유형	근무기간		주당 총 근무시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신청내역		2024년 3 2025년 2		20시간			9:00~13 ,화,수,목	
신청사유	육아	육아대상	성명	000	생년월			0.00.00
1.9VIII	(○째)	1-1-11-0	(한자)		(나이)		(만0세)	

- 붙임 1. 시간선택제 근무 신청서 1부
 - 2. 학교장 추천서 1부
 - 3.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및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끝.

서울○○초등학교장

교감 교장

협조자 접수

시행 우

전화번호

※ 주의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하여 시간선택제 신청(지정)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당"이 지급되며, 추후 (시간선택제 신청 동일자녀에 대해)육아휴직 시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지 않음(본 메뉴얼 16p 참조)

가족간병 관련 서류 양식(신청)

서 울 ○ ○ 초 등 학 교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교육장(초등교육지원과장) (경유)

제 목 (○○초)교육공무원(초등학교 교사) 시간선택제 근무 신청서류 제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제1항 및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본교 교사의 시간선택제 근무 신청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ž	딕 위	학교 내 전환 추천순위	
L 6*4	000	0000.00.00.		서울○○초등	학교		교사	0/0
시청미연	전환유형	근무	기간	주당 총 근무시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신청내역		2024년 3 2025년 2		20시간			9:00~13 ,화,수,목	
시원시오			성명	000	생년월	년월일 0000.00.00		0.00.00
신청사유	가족간병	간병대상	(한자)		관겨	I	부,모,	배우자,자녀

- 붙임 1. 시간선택제 근무 신청서 1부
 - 2. 학교장 추천서 1부
 - 3.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및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 4. 진단서 1부. 끝.

서울○○초등학교장

교감	교장	
협조자		접수
시행		
우		
전화번호		

'학업'관련 서류 양식(신청)

서울 ○ ○ 초등 학교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교육장(초등교육지원과장) (경유)

제 목 (○○초)교육공무원(초등학교 교사) 시간선택제 근무 신청서류 제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제1항 및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본교 교사의 시간선택제 근무 신청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학교 내 전환 추천순위
	2.674	000	0000.0	00.00.	서울○○초등	학교	교 교사 0/0	
		전환유형	근무	기간	주당 총 근무시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신청내역		2024년 3 2025년 2		20시간		09:00~13 (월,화,수,목	
	시원시오	şrod	모ㅠ하이	V4 1 1	해당대학원	0	○대학원(○○)교육과)
	신청사유	학업	목표학위	석사	재학기간	200	00.00.00~20	00.00.00

- 붙임 1. 시간선택제 근무 신청서 1부
 - 2. 학교장 추천서 1부
 - 3. 입학 확인서(합격증, 재학증명서 등) 및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끝.

서울○○초등학교장

협조자 접수

교장

시행 우

교감

전화번호

'사회적응 능력 배양' 관련 서류(신청)

서울 ○ ○ 초등 학교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교육장(초등교육지원과장) (경유)

제 목 (○○초)교육공무원(초등학교 교사) 시간선택제 근무 신청서류 제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제1항 및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본교 교사의 시간선택제 근무 신청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학교 내 전환 추천순위	
281	000	0000.00.00.	서울○○초등	ऻॾ○○초등학교		0/0	
신청내역	전환유형	근무기간	주당 총 근무시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선정내목		2024년 3월 1일~ 2025년 2월 28일	20시간		09:00~10 (월,화,수,		
시원시오	사	평생교육기관명		수강	기간		
신청사유	능력 배양		미수강시 '해당없음' 기재		미수강시 '해	<i> 당없음' 기재</i>	

- 붙임 1. 시간선택제 근무 신청서 1부
 - 2. 학교장 추천서 1부

전화번호

3. 수강 확인서(신청서 등) 또는 사회적응 능력 배양 계획서 1부. 끝.

서울○○초등학교장

교감 교장 협조자 접수 시행 우 참고

시간선택제 교사 지정 관련 인사발령 문안(예시)

시간선택제 교사 지정 인사발령 문안(예시)

소 속	직 위(교 과)	성 명	발령사항(전환사유)	기 간	비고
○○중학교	중등학교 교사 (○○)	김○○	시간선택제 근무를 명함(○○)	2024.3.1.~ 2025.2.28. (주당 총 20시간 근무)	

시간선택제 교사 근무 지정 해제 인사발령 문안(예시)

소속	직 위(교 과)	성 명	발령사항	비	모
○○ 중학교	중등학교 교사 (○○)	김○○	시간선택제 근무 해제를 명함		